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6. 10.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의 부담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톤당 단가제 도입을 유보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9조의2의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총액을 매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총액을 매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뜻은 -----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1. (개정안과 같음)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개정안과 같음)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 ----- ----- 구 미 시 장 (이 하 “시장” 이라 한 다)--.	3. (개정안과 같음)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⑤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 ---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 ----- -----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시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수집·운반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의 지급 등) ① -----

--.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총액을 매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
----- 지급-----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
기 위해 대행업체
에 대하여 자료 제
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대행업체
가 근로자의 임금 등
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
게 지급한 것으로 확
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경고, 계약해지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대행업체
에서 미근무 직원 급
여 청구 등 허위·부
당한 방법으로 대행
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 해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개정안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 <u>호의 어느 하나에</u> ----- ----- ----- -----.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